

# 2021년도 제1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9.(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3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92건(안건번호 제2021-61953호~6243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61953호~61956호(순번 1번~4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소설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61957호(순번 5번)는 ※※※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단, 이미 삭제된 게시물은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98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13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은 6쪽의 게시판명, 게시글 제목 7쪽의 저작물명, 방송국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C 위원: 제1호 안전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A,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는 게시판명, 게시글, 저작물명, 방송국명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99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4번은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소설 '※※※※※'을 무료 내지 50 포인트에 제공 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4건임.

(순번 1번, 3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여 무료 내지 30 포인트에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B, A, D, C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4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번은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거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 ※※ ※※※※※※'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2건임.  
해당 저작물은 ※※ ※※※에서 2013. 10. 6.부터 2014. 3. 30.까지 방영하였으며, 우리나라 ※※※※에서 2013. 10. 11.부터 2014. 4. 4.까지 방영되었음.  
(순번 5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1화~25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였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2021. 6. 9. 현재 첫 번째 게시물은 비공개글로 전환되었으며, 두 번째 게시물은 삭제되었음.  
비공개로 전환된 게시물의 경우,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형태

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이며, 이미 삭제된 게시물은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게시자가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모니터링된 것을 알 수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게시자가 구체적인 보호원의 모니터링 사실을 알 수 없지만, ※※※ 측에서 어떠한 게시물로 이용자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일부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겠다”고 게시자에게 통지한 후 보호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신고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참석 위원 전원: 시정권고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단, 이미 삭제된 게시물은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6번~48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986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61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를 119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1. 5. 31.에 방영한 7화 전체 분량인 약 60분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함. tvN에서 2021. 5. 10.부터 현재 10화까지 방영중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 화당 2,200원에 대여 가능하며, 티빙(TIVING)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영화 '허드 앤 썬'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88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허드 앤 썬'을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2021. 4. 29.에 공개한 전체 분량인 약 119분을 mkv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넷플릭스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음악 '헤픈 우연'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31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헤픈 우연'을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June. 01. zipx'라는 이름의 파일로 제공 중인 음원 103곡 중 1곡임. 2021. 5. 20.에 발매한 최신 국내 음악이며, 실연자는 헤이즈(Heize)임. 2021. 6. 8. 기준 멜론 사이트 음원 차트 순위 2

위이며,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A, E, C, D 위원: 순번 6번~486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번~48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61953호~62438호(순번 1번~48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6. 16.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